

- 2026년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인력 지원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 수출 초보 기업(수요처)에 무역 전담 인력(공급자)을 제공하여, 해외판로 확대 및 신규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인력 지원」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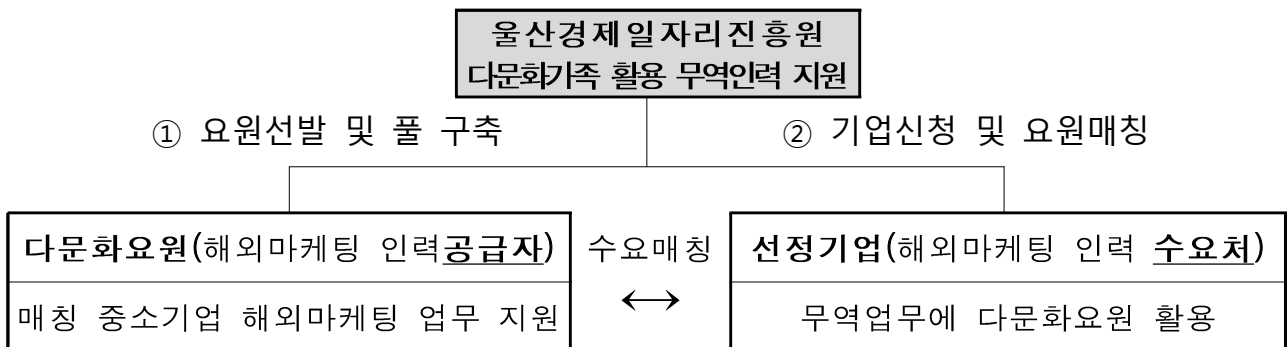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6. 4. 28.(화), 18:00까지
- 모집대상 : 다문화 지원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울산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신청가능 국가 : 6개국 24명(페루 1, 몽골 1, 베트남 5, 중국 8, 러시아 3, 일본 6)
- 지원내용 : 관내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중 한국어 능통자를 선발 후 출신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매칭하여 해외마케팅 인력 지원
 - 세부지원내용 : 요원활용비 월 90만원(7개월 간), 해외바이어 동반출장비 등

□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절차

기업 모집	정량평가	요원매칭 및 선정공고	요원활용	월 활동 및 실적보고
~ 4.28.(화),18:00	4.29.(수)	4.30.(금)	5월~11월	7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홍보 - 요원풀 공개 • 전자우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검토 • 정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고 • 전자우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 및 통역 • 해외마케팅 • 해외동반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활동보고(매월) • 실적보고서(12월)

※ 참가자 모집 및 매칭결과에 따라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분	기간	내용	주관	비고
기업-요원 매칭	4.30.(목)	기업 ↔ 다문화요원 매칭	진흥원	기업 수요에 따라 매칭
간담회	5.7.(목)예정	기업 ↔ 다문화 요원 상견례	진흥원	간담회 진행
해외마케팅 교육	7월	해외마케팅 교육 수강	다문화요원	무역아카데미 과정
요원 활동	5월~11월	다문화요원 해외마케팅 활동	다문화요원	해외동반출장, 통번역 등
활동비 지원	5월~11월	다문화요원 월 활동비 지원	매칭기업	월 활동보고서 제출
해외출장비 지원	5월~11월	요원 동반출장비 지원	진흥원	매칭기업 요청시마다

I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기업모집

○ 모집기한 : 공고일 ~ 4. 28.(화), 18:00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시 현행화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수출실적증명원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인력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www.ultrade.kr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서식집
	② 참가서약서(소정양식)	서식집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서식집
	④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1부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전년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비회원은 우측 발급기관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⑦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⑧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⑨ 최근 3년 내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해당 시
	⑩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유효기간 내)	해당 시
	⑪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인증 및 산업재산권 사본	해당 시
	⑫ 외국어 지원 홈페이지 주소 및 제품 소개 외국어 자료(카탈로그 등)	해당 시

□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대리신청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매칭방법**

○ 우선매칭

- ① (연속참가) 직전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매칭된 중소기업과 다문화 요원이 당해연도에도 동일 매칭을 희망하며 사업에 참가한 경우
- ② (동반 참가) 중소기업과 다문화요원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신규로 동반 참가한 경우

○ 일반매칭

- ① 선정기업의 수출 목표국가와 다문화요원의 출신지가 동일한 경우
- ② 선정기업의 수출 목표국가와 다문화요원의 출신지의 언어가 동일한 경우

○ 추가 매칭 : 선정기업이 수출목표 국가 출신 다문화요원의 공급부재로 매칭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문화요원 추가선발 또는 변경 1회 제공

○ 요원 교체 : 매칭된 중소기업과 다문화요원의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기업의 수출목표 국가 출신 타 다문화요원으로 1회 변경

II

지원금 지급

□ 다문화요원 월 활동비

- 지원항목 : 매칭기업이 활용한 다문화요원의 해외마케팅 업무수행 월 활동비
- 지원한도 : 월 90만원(교통비 포함)
- 활동내용 : 매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전담인력 업무 수행
- 활동기간 : 5월 ~ 11월 총 7개월간

○ 근로시간	구분	주	월
	최소(시간 / 일)	10시간	40시간 또는 6일(8시간 기준)
	최대(시간 / 일)	15시간	60시간 또는 8일(8시간 기준)

- 신청시기 : 기업이 다문화요원에 활동비 지급 후 진흥원에 지급신청(익월 첫째주)
- 지급방식 : 월 활동보고 증빙서류 검토 후 → 기업계좌로 직접송금
- 증빙서류

목록	발급기관
① 월 활동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서식집
② 월 활동비 지급 증빙서류 - 다문화요원 신분증 2종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외국인등록증) - 월 활동비 입금확인증(이체내역서, 기업→다문화요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다문화요원 통장사본	
③ 기업 통장사본 1부	

□ 선정기업 동반출장비

- 지원항목 : 다문화요원의 해외출장비(항공료, 숙박비, 비자, 여행자보험 등)
- 지원한도 : 동반출장 1회당 최대 150만원 (※기본 [카드결제](#), 현금은 도착비자만)

항목	지원내용	한도
항공료	이코노미 왕복	출장목적일 기준, 출입국 전후 7일까지 인정
숙박비	스탠다드 기준	1박당 20만원, 5박 지원, 조식포함 패키지 인정
여행자보험	표준 보험료	최대 3만원
비자	비자발급비	입국비자 의무발급 국가만 해당

- 신청시기 : 기업에서 다문화요원의 동반출장비 일괄 선결제 후 신청
- 지급방식 : 해외출장비 증빙서류 검토 후 → 기업계좌로 직접송금
 - ※ 부가가치세 및 각종수수료는 선정기업이 거래처(여행사)에 해외출장비와 합산 결제
- 지원제외

○ 기업선정 및 다문화요원 매칭 이전 다녀온 해외출장비
○ 다문화요원 이외 출장자의 해외출장비
○ 다문화요원 본인이 직접 결제한 해외출장비
○ 출장비를 출장국가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다문화요원의 동반출장을 증빙할 현지 출장사진을 누락한 경우
○ 다문화요원의 해외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에이전트, 타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내용을 허위 작성 또는 위변조한 경우
○ 다문화요원의 해외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A/S, 제품 사용 및 기술 교육 출장 - 해외 공관, 무역관 등 해외 현지에 설치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방문 등 - 단순 현지시장조사 등 해외바이어 상담이 포함되지 않은 출장 - 목적지 경로를 벗어난 경유지를 포함한 항공권 비용 - 항공권 취소 및 재발권 수수료 - 민박,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숙박비 - 미니바, 립서비스, 전화요금 등 숙박비 외 비용

○ 증빙서류

필수여부	목록	발급기관
필수	① 동반출장 지원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서식집
	② 항공료 : 예약확인서(E-Ticket), 탑승권(보딩패스)	
	③ 숙박비 : 예약확인서(숙소바우처, 인보이스)	
	④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증권	해당 시
	⑤ 결제내역 : 카드매출전표	
	⑥ 기업 통장사본 1부	
선택	⑦ 비자 : 비자발급증명서	해당 시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백가람 선임	gr0198@ubpi.or.kr	052-283-7143

붙임 서식집 1부. 끝.